

### 3. 標準設計圖書運用規則 改正令

建設部令 第477號

표준설계운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1 조(목적) 이 규칙은 건축사법 제4조 및 건축사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 및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(이하 “표준설계도서등”이라 한다)의 인정·보급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) ①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은 당해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20동 이상 건축하게 되는 경우로서 시공의 표준화 및 자재의 규격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.

1. 주택·축사·학교
2. 표준설계도서의 작성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사용할 건축물
3.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과 유사한 건축물

②영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 등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 및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기본설계도서
2. 보급 및 관리계획을 기재한 서류
3.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는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③건설부장관은 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기본설계도서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④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기본설계

도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건설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⑤건설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 실시설계도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⑥건설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실시설계도서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
⑦제4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도서의 심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
**제 3 조(표준설계도서등의 표시)** 건설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표준설계도서 등에는 도면마다 도서의 명칭, 공고번호 및 공고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.

**제 4 조(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)** ①건설부장관이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

준설계도서 등의 원도와 기본도서(평면도 및 투시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그 보급에 필요한 수량만큼 서울특별시,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에게 송부하고 그 송부를 받은 시·도지사는 건축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 등을 송부받은 건축허가관청은 그 중 기본도서는 일반이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원도는 당해 표준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한다.

③건축허가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 및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를 지정하여 그 원도를 교부하고 이를 복사하여 실비로 판매하게 할 수 있다.

**제 5 조(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보급)** 건설부장관이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한 경우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당해 신청인은 표준설

계도서 등의 보급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따라 이를 보급·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 6 조(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대장)** 건설부장관, 건축허가관청,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(이하 “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”라 한다)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 7 조(활용실적보고)** ①표준설계도서등의 관리자는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축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건축허가관청은 매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시·도지사 및 주택외의 건축물에 관한 표준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 매반기 다음달 20일까지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의 활용실적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.

**제 8 조(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제출)**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그 인정을 받은 자는

인정받은 날부터 5년마다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검토사항과 당해 표준설계도서등에 대한 폐지 또는 보완여부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대한 적합여부
2. 활용도 및 표준화
3. 건축물의 구조, 기능등의 현실에의 적합여부

## 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약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기존의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전의 표준설계도서등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등으로 본다.
- ③(표준설계도서등의 의견제출에 관한 경과조치) 표준설계도서등을 작성하여 1987년 3월 31일 이전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표준설계도서등에 관한 의견을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(표준설계도서등의 인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인정신청중에 있는 표준설계도서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인정신청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(앞면)

표준설계도서(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)인정신청서	처리기간
	90일
<p>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</p> <p>표준설계도서(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)의 인정을 받고자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     월   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 (주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성명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건설부장관 귀하</p>	
구비서류	수수료
	없음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본설계도서(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내용 및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)</li> <li>2. 보급 및 관리를 기재한 서류</li> <li>3. 특수공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인 경우에 한 한다.)</li> </ol>	

2806-03-8E  
'80. 1. 14 승인

190mm×268mm  
(신문용지 54g/m<sup>2</sup>)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 : 생략

[별지 제2호서식]

표준설계도서(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) 관리대장

도서의 종류 및 명칭:

광고번호 및 연월일: 건설부광고 제            호(        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)

①연월일	②수량 또는 제작수량	활용 실적		⑤재고	⑥비고
		③수량	④용도		

[별지 제3호서식]

표준설계도서(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) 활용실적보고서

년 월 일  
 보고자 (인)

①도서의 종류 및 명칭	②공고번호 및 연월일	⑤활용실적		비 고
		③수 량	④용 도	

2806-03-10D  
 '80. 1. 14 승인

190mm × 268mm  
 (신문용지 54g/㎡)